

# 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	기관위원장
람	

제1298호 2017. 9. 11(월)

## 차 례

### 고 시
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22호 2018년도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고시 ----- 1

### 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233호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 미보상 및 구역 외 도로개설  
공사 토지·지장물 보상계획 열람공고(변경) ----- 2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234호 가재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사업시행계획서(안) 공람공고  
----- 5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241호 인천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·  
공고 ----- 6

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7-122호

## 2018년도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고시

「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2018년도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. 9. 11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고 시 명 : 2018년도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
2. 목 적
  - 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임금 지급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3. 적용기간 : 2018. 1. 1. ~ 2018. 12. 31.
4. 주요내용
  - 생활임금액 : 9,400원(시급)
  - 생활임금 적용항목 : 기본급
  - 생활임금 적용대상
    - 구 소속 근로자와 구 출자·출연기관 소속 근로자
    - 구 소속 근로자 및 구 출자·출연기관 소속 근로자, 구로부터 그 사무 및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위탁 및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
  - ※ 적용제외
    - 공공근로,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
    - 지방공무원의 임금체계를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근로자
    -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
5. 기 타
  -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문의 : 일자리지원과(560-5802)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-1233호

##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 미보상 및 구역 외 도로개설공사 토지·지장물 보상계획 열람공고(변경)

인천광역시고시 제2010 - 411호 (2010.12.27.) 및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4-140호 (2014.09.11.)로 고시된 『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외 도로개설공사』에 편입되는 토지·지장물 등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(보상계획의 열람 등)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·이해관계인께서는 물건 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하여 주시고 보상협약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7. 9. 11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### 1. 사업개요

- 가. 사 업 명 :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보상(구역 미보상 및 구역 외 도로개설공사)
- 나. 위 치 :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272번지 일원 42필지
- 다. 사 업 면 적 : 34,025㎡
- 라. 사업시행자 성명·주소: 인천광역시서구청장(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)
- 마. 사 업 기 간 : 실시계획인가일 ~ 환지처분일

### 2.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

- 가. 소 재 지 :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272번지 일원 42필지
- 나. 보상대상 : 위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토지 및 지장물건 등 일체

- 다. 열람내용 :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와 지장물건 등 확인 및 누락 여부
- 라. 보상조서 : 붙임문서 참조

### 3. 열람 및 이의신청

가. 열람(이의신청)기간 : 2017. 9. 11.(월) ~ 2017. 9. 25.(월), (14일간)

나.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: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 
(전화 : 032)560-4750~4753, 팩스 : 032)560-2774)

1)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에 물건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 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.

다. 이의제기 :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하며,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
### 4. 보상협의 및 지급시기 : 감정평가 실시결과 개별통지 예정

가. 보상시기 : 2017년 12월 이후 보상협의 예정

나. 기 타 : 보상계획 공고 후 관계 법률상의 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.

### 5. 보상방법 및 절차

가. 보상금 산정방법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서구청과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

나. 보상금 지급방법

1) 지급방법 : 현금보상(계좌입금)

2) 보상장소, 보상금액, 협의기간,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로 통지.

다. 보상절차 :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→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→

손실보상 협의 → 수용재결(협이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) → 재결금액 지급 및 공탁  
 (※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83조 및 제85조에서 정한 기한이내에 이의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.)

## 6. 감정평가업자 선정

가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시와 서구청이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 이외에 토지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.

나.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.

## 7. 기타사항

가. 보상조서 물건내역은 추후 계획변경, 재조정,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으며,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법령에 의함.

나. 물건조사시 조사거부, 장기부재 등으로 인한 미조사 물건 등에 대하여는 열람기간 중 조사요청이 있을시 조사를 실시하고, 조사요청 또는 이의신청

이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현황대로 보상할 계획임.

다. 본 열람공고와 관련되는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조서 등을 확인바라며,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 이나 송달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열람 공고로 송달에 갈음합니다.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7-1234호

## 가재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사업시행계획서(안) 공람공고

인천광역시고시 제2017-113호(2017. 5. 15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7-114호(2017. 9. 4.)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가재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서(안)을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경관과(☎032-560-4768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7. 9. 11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###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 류 : 주거환경관리사업
- 명 칭 : 가재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

###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그 면적

- 위 치 :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54번지 일원
- 면 적 : 80,579.5m<sup>2</sup>

###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성 명 :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- 주 소 :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

### 4. 공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

### 5.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장소 :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재생경관과(별관3층)

### 6. 공람내용 : 가재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사업시행계획서(안)

### 7. 관계도서 : 계재생략(공람장소에 비치)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7- 1241호

## 인천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· 공고

인천광역시 고시 제2014-22호(2014.02.03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인천 도시계획시설 【주차장】 사업을 시행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작성 서류 열람을 공고합니다.

관계도서는 서구청 도시개발과(☎560-4762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7. 9. 11.  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58-9번지 일원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 - 종류 :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
  - 명칭 : 도시계획시설(주차장 및 제1·2종 근린생활시설) 조성사업
3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

용 도	면 적 (㎡)
주차장	7494.61
일반음식점	1426.40
소매점	968.91
사무소	729.59
합계	10,619.51

## 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○ 성명 : (주)금란 김 병 택

○ 주소 :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111, 2층(오류동)

## 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: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5개월

## 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: 붙임과 같음

## 7. 열람 장소 및 기간

○ 장소 : 서구청 본관4층 도시개발과

○ 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## 용 지 조 서

번호	행정 구역	지번	지목	지적면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소유자	소유권 이외의 권리		비고
							권리 종류	성명	
1	서구 오류동	1658-9	주차장	3883.5	3883.5	(주)금란			
합 계				3883.5	3883.5				